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0.
제안자 : 거창군수

## 1. 사유

- 웅양면에 지방상수도를 건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취득	토지	4필지		5,304	21,420	
		웅양면 죽림리 산106	임	138	45	배수지
		웅양면 죽림리 산106-2	임	12	2	배수지
		웅양면 죽림리 산97-3	임	2,646	431	배수지
		웅양면 죽림리 252-5	답	2,508	20,942	정수장

## 3.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처분	건물	해 당 없 음				
	토지	해 당 없 음				

##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5. 전경사진 및 지적도 ⇨ “따로 붙임”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용양면 죽림리 산106번지 외 3필지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 (정장리 일반공업단지내 부지 매입)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0. .
제안자 : 거창군수

### 1. 사유

- 현재 입주 가능한 공장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국농소 일반공업지역내의 미개발된 부지를 매입 공장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계				45,900	884,968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의외 35필지	전	45,900	884,968	

※ 상세 토지 내역 붙임 참조

### 3.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별	재산소재지	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처분		해당없음				

###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5. 전경사진 및 지적도 ⇨ “따로 붙임”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취득대상 목록

회 계 명	일반회계
-------	------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수량					
계		36필지	45,900	884,968				
1	토지	거창읍 정장리 71-5	550	16,665	2008	공장용지 확보	합자회사정개발	
2		거창읍 정장리 83	1,349	35,074	2008	"	이위상	
3		거창읍 정장리 84	932	24,884	2008	"	표분달	
4		거창읍 정장리 87	1,749	48,622	2008	"	김영훈	
5		거창읍 정장리 147-1	592	22,555	2008	"	김숙자	
6		거창읍 정장리 147-2	1,236	46,474	2008	"	이창희	
7		거창읍 정장리 147-3	908	50,848	2008	"	이정우	
8		거창읍 정장리 147-4	60	3,360	2008	"	"	
9		거창읍 정장리 151	776	28,169	2008	"	김영일	
10		거창읍 정장리 152	162	2,932	2008	"	이봉석	
11		거창읍 정장리 153	460	11,960	2008	"	이중훈	
12		거창읍 정장리 154	502	11,847	2008	"	이기형	
13		거창읍 정장리 155	4,390	95,263	2008	"	전주이씨완원군 파소파공종중	
14		거창읍 정장리 156	165	3,779	2008	"	이강준	
15		거창읍 정장리 157	238	6,188	2008	"	이성우	
16		거창읍 정장리 158	585	14,333	2008	"	전주강씨추영공 파종중	
17		거창읍 정장리 159	823	17,859	2008	"	국(재무부)	
18		거창읍 정장리 161	1,001	38,639	2008	"	박주호	
19		거창읍 정장리 161-1	761	29,375	2008	"	"	
20		거창읍 정장리 162-1	1,025	39,565	2008	"	이은수	
21		거창읍 정장리 162-2	830	32,038	2008	"	"	
22		거창읍 정장리 163-1	1,322	34,372	2008	"	이윤형	
23		거창읍 정장리 164	595	15,470	2008	"	신중갑	
24		거창읍 정장리 165-2	1,213	28,991	2008	"	박주호	
25		거창읍 정장리 165-5	218	5,210	2008	"	이낙선	
26		남상면 월평리 946	929	18,394	2008	"	이준우	
27		남상면 월평리 947	4,671	19,571	2008	"	전주이씨완원군 파소파공종중	
28		남상면 월평리 948	912	19,790	2008	"	신선재	
29		남상면 월평리 949	800	17,360	2008	"	박주남	
30		남상면 월평리 950-1	2,605	10,915	2008	"	박주호	
31		남상면 월평리 950-2	671	14,561	2008	"	신중갑	
32		남상면 월평리 950-3	3,742	19,758	2008	"	신판재	
33		남상면 월평리 950-4	1,764	29,988	2008	"	신중모	
34		남상면 월평리 951	996	16,932	2008	"	"	
35		남상면 월평리 951-1	1,807	31,790	2008	"	박상근	
36		남상면 월평리 956-2	4,561	21,437	2008	"	이위상,이현배, 이현봉,이현순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양수·양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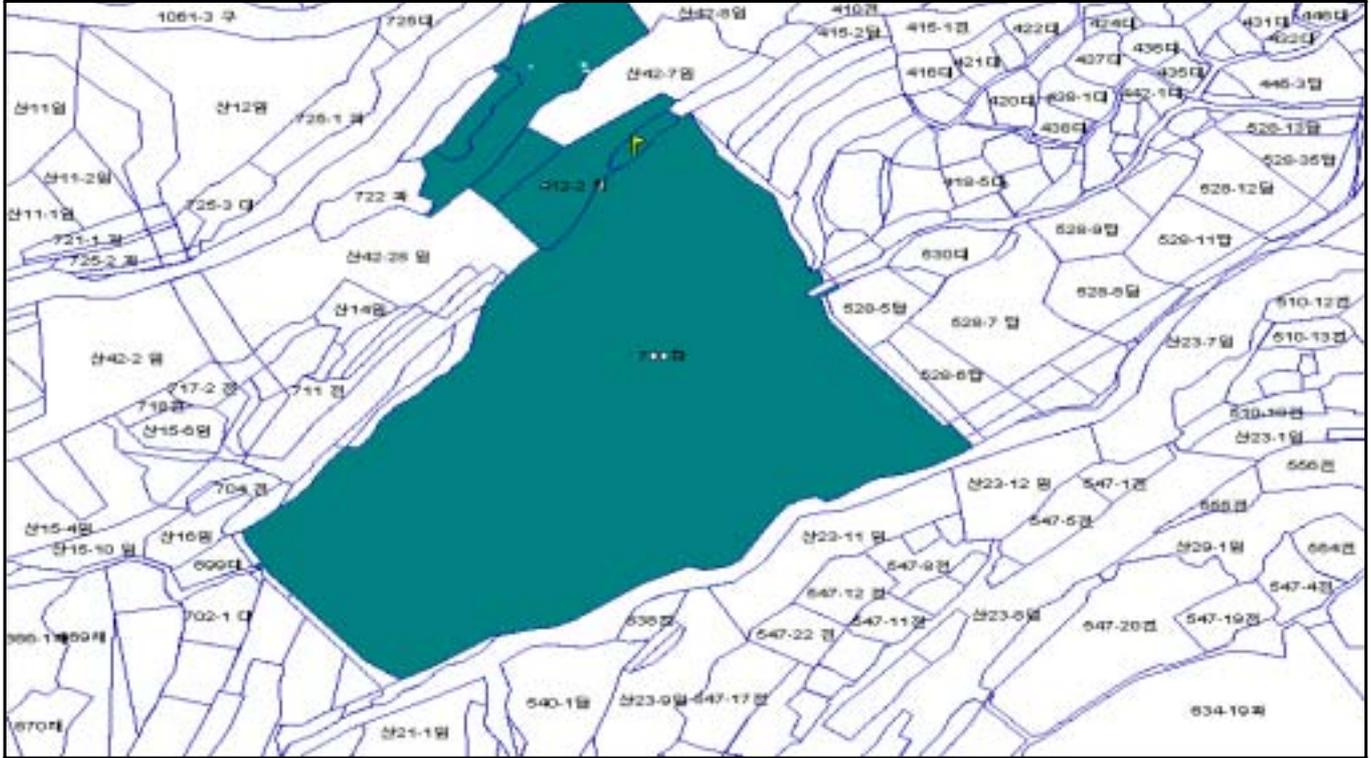
회 계 명	일반회계
-------	------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 유 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b>총 계</b>			<b>59,697.97</b>	<b>13,157,557</b>				
<b>소 계</b>			<b>17,882.97</b>	<b>7,063,390</b>				
1	건물	거창읍 송정리 412-1	17,882.97	7,063,390	2008	승강기특성화 대학 설립	군→학교법인	
2	"	거창읍 송정리 412-2						
3	"	거창읍 송정리 700						
<b>소 계</b>			<b>41,815</b>	<b>6,094,167</b>				
1	토지	거창읍 송정리 412-1	239	37,284	2008	승강기특성화 대학 설립	군→학교법인	
2	"	거창읍 송정리 412-2	1,619	408,901	2008	"	"	
3	"	거창읍 송정리 700	36,159	5,640,804	2008	"	"	
4	"	거창읍 송정리 산42-3	496	937	2008	"	"	
5	"	거창읍 송정리 산42-15	2,747	5,192	2008	"	"	
6	"	거창읍 송정리 산42-16	555	1,049	2008	"	"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승정리 412-1번지 외 5필지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인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